

# 漁船行政 一元化와 施策方向

水 產 廳

施設局長 金 應 守

## 目 次

1. 漁船行政 一元화의 背景
2. 一元化의 内容
3. 一元化後의 問題點과 對策
4. 80年度 施策의 方向

### 1. 漁船行政 一元화의 背景

漁船行政이라함은 漁船의 需給計劃과 建造支援等 助長行政, 建造한 漁船을 檢查하고 登錄하는 管理行政 漁船建造過程에서 技術의in 指導와 監督을 行하는 技術行政 및 船員需給業務等을 總稱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이와같은 漁船行政이 多元化 되어 行政需要者인 漁民의 不便은 莫甚하였다 것이다.

即 水產廳은 漁業生產手段의 基本이 되는 漁船의 需給計劃과 漁船建造, 資金支援等 助長行政을 擔當하여 왔고, 海運港灣廳에서는 漁船의 登錄과 檢查業務等 漁船管理行政과 船員業務를 各己 分掌하게 됨에 따라 漁民의 立場에서 볼때 많은 不便과 隘路가 있었던 것도 事實이었다.

이에 政府는 보다 合理의in 漁船行政과 漁民의 便益을 圖謀하고자 多元化된 漁船行政을 一元化 하기 為한 作業을 積極的으로 推進하기에 이르렀다.

1970年 1月부터 1971年 12月末 까지 20屯未滿의 漁船登錄과 檢查業務를 交通部에서 引受하고자 한바 있으나 制度未備와 政府의 職制, 地方機構, 人員豫算 確保難等의 理由로 그 實行을 보

지 못하였으며, 그以後 年例行事처럼 行政改革委員會等의 調査研究等으로 一元化作業을 推進한바 있었다.

1977年에는 水產業界의 強力한 要望에 副應하여 漁船法의 制定을 試圖, 1977, 7, 20 漁業生產力의 增強과 水產業의 合理的in 發展을 圖謀코자 漁船法案을 마련하고 斯界에 對한 公聽會黨政協議(10.4) 經濟長官 會議(10.6) 國務會議議決(10.24)을 거쳐 政府案으로 國會에 提出(11, 9) 12月 15日 第99回 定期國會에서 通過 되므로서 1977. 12. 31 法律 第3063號로 漁船法이 公布하게 된것이다.

1978年度에는 同法施行에 必要한 施行令(大統領令 第9198號), 同施行規則(農水產部令 第748號) 및 漁船設備等에 關한 規則(農水產部令 第749號)等을 制定 公布하기에 이르렀고, 1979年 1月 1일부터 漁船法 發效와 同時に 多岐化된 漁船行政이 水產廳으로 一元化되어 漁船行政을 綜合的으로 推進할수 있게 되었고, 漁民의 便益을 圖謀하는데 進一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船員業務와 漁船建造 承認業務가 當廳으로 移管되지 않은 狀態이나, 이것도 早速히 移管되도록 積極 推進할 方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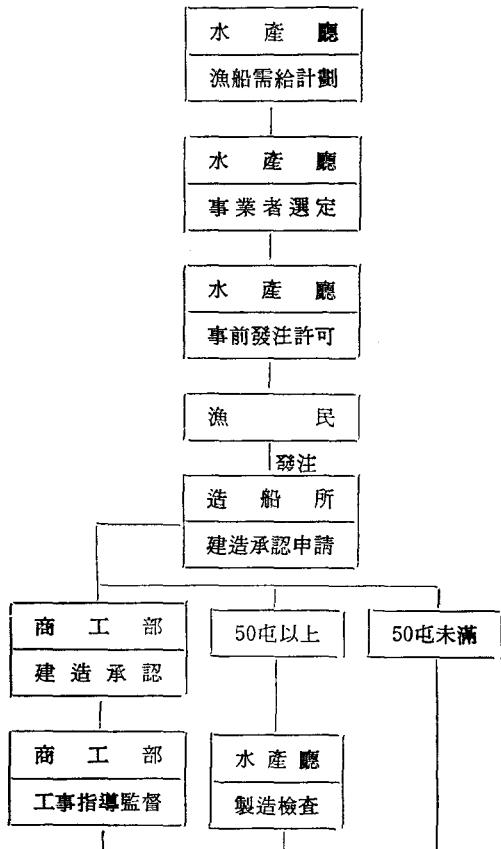
### 2. 一元化的 内容

그러면 여기서 漁船行政 一元化的 内容을 重點的으로 說明하고자 한다.

#### 가. 漁船 發注體系

現在까지 各部處에서 管掌하고 있던 漁船의 登錄과 檢查業務가 從來 船舶法과 船舶安全法의 適用을 받았 海運港灣廳에서 管掌하던 것을 1979. 1. 1 부터 漁船法의 適用을 받아 水產廳에서 管掌하게 되었고 또한 從來 水產資源保護令에 의거 漁船의 建造, 改造業務가 漁船法에 依據 許可制度로 바뀌게 되었으며 또한 漁船性能 向上을 為한 試驗研究가 制度의 保障을 받게 되었는데 그 體系를 圖示하면 別表 1과 같다.

[別表 1]



그런데 여기서 問題點으로 台頭된 것은 總屯數 20屯以上의 漁船 建造時 造船工業振興法 第10條의 规定에 依據 商工部長官의 建造承認(造船所 代行)을 得하여야 함으로 節次上 多少煩雜한 점이 있어 漁船法 第5條의 规定에 依한 漁船 建造, 改造 發注許可를 得하였을 때에는 商工部長官의 建造承認을 省略하고 申告로 経을 할수 있도록 造船工業振興法의 改正이 所望스러움으로 繼續補完코자 한다.

#### 나. 事前發注許可制度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漁民이 漁船을 建造하거나 改造하고자 할때에는 漁船法 第5條의 规定에 依據 事前에 發注 또는 改造許可를 받도록 하였다. 이것은 無節制한 生產手段을 抑制함으로서 우리나라 沿近海의 水產資源을 効率的으로 開發하고, 資源의 持續的인 再生產力を 保障하기 為하여 導入한 制度인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서 有限한 沿近海水產資源의 保護는勿論 建造한 漁船은 即時 漁業許可로 이어지게되고 나아가서는 漁業調整效果를 通하여 漁民의 收益性을 保障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이 制度는 앞으로 더욱 發展시켜 우리나라 漁船 漁業의 基盤을 構築하는데 크게 寄與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다. 漁船의 登錄 檢查體系

##### 1) 漁船의 登錄

漁船法上 1屯以上의 無動力船과 全動力漁船의 所有者は 船籍港을 管轄하는 道知事が 備置하는 漁船原簿에 登錄을 하여야 하며 登錄을 하지 않은 船舶은 漁船으로서 使用할수 없으며 20屯以上의 漁船은 船舶登記를 한 後에 登錄을 하도록 规定(法 第9條)하였다.

萬若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漁船으로 使用할 때에는 船舶法 第29條의 规定에 依하여 處罰을 받도록 规定하고 있어서 반드시 登錄을 한 후에 漁船으로 使用하여야 할 것이다.

漁船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住所地를 管轄하는 市長, 郡守에게 登錄申請을 하도록 하였다. (施行規則 第9條 第12項) 그런데 從來에는 20屯以上의 漁船은 漁船原簿에 登錄을 하고 船舶國籍證書를 交付받고 5屯以上의 無動力船과 20屯 未滿의 全動力漁船은 船籍原簿에 登錄하고 船籍證書를 交付받도록 하였음에 따라 5屯未滿의 無動力漁船의 境遇는 法의으로 아무런 制度가 없으며 그 正確한 實態를 把握할 수 없는 實情이었으나 漁船法 施行後에는 1屯以上의 無動力船과 全動力船은 登錄을 하도록 规定하고 있어 앞으로는 1屯以上 漁船의 勢力を 正確히 把握할 수 있게 되었다. (別表 2 體系圖參照)

##### 2) 漁船의 檢查

漁船은 海上의 惡天候 속에서 操業하게 되고 人命과 財產을 保護하는 特殊性으로 因하여 高度의 安全性이 維持되어야 함으로 그 安全保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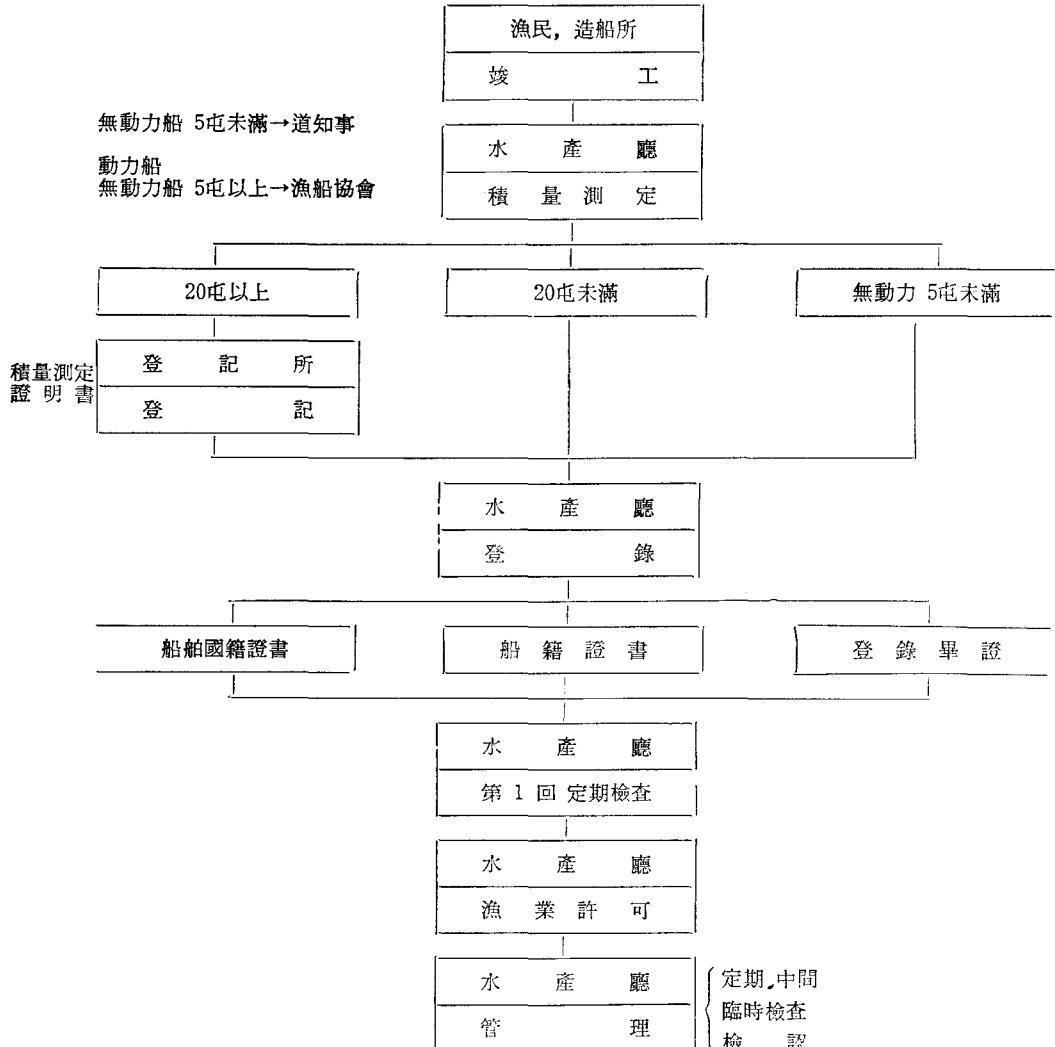
必要한 設備의 設置, 補修, 維持가 함으로서 海上에서의 모든 危險을 事前에 防止하고 操業能率의 向上去 期하기 為하여 漁船의 檢查는 必須의인 것이다.

따라서 政府는 漁船安全에 必要한 施設과 復原性 滿載吃水線의 指定等 關係規程을 마련하고 定期的으로 漁船의 檢查를 받도록 規定하고 있다.

法施行前까지는 漁船도 船舶安全法에 根據를 두고 政府의 檢查가 施行 되었지만 漁船法이 施行되면서 漁船法을 根據로 하여 檢查가 執行되게 되며 漁船에 對한 檢查業務는 法 第21條에 依하여 設立되는 韓國漁船協會가 代行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現在까지 政府의 檢查體制에서 民間代行體制로 轉換된 것이다.

(別表 2 體系圖參照)

〈別表 2〉 漁船 登錄, 檢查體系圖



## 라. 漁船檢查機關

### 1) 韓國漁船協會의 設立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漁船의 檢查業務의 重要性은 莫重한 것이다.

따라서 有能하고 老練한 技術人力의 確保가

檢査業務의 質的水準을 維持할 수 있는 關鍵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技術人力의 確保는 行政組織의 特殊性으로보아 公務員이 直接 擔當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漁船法 第21條의 規定에 依據 漁船과 그 設備에 關한 政府의 檢查業務를 代行하고 漁船의 性能向上을

爲한 調查研究 및 技術開發 業務를 遂行함으로서  
水產業 發展에 寄與케하고자 1979. 1. 4 “韓國  
漁船協會”를 設立하게 되었다.

## 2) 機能

韓國漁船協會는 그 設立 趣旨와 같이 漁船法  
第22條의 規定에 依據 水產廳長 또는 道知事의  
漁船檢査業務를 代行하는 것이 그 機能의 大宗  
을 이루고 있으나 그 重要 機能은 다음과 같다.

○漁船의 檢査, 製造檢査 및 積量測定 滿載吃  
水線의 指定에 關한 業務代行

○漁船의 船型構造 및 裝備에 關한 研究 및 技  
術開發

○標準漁船의 設計 審議 普及

○漁船用 材料, 用品 및 機資材의 試驗研究 및  
檢査

○漁船의 建造監督 및 鑑定

○會誌 및 漁船에 關한 圖書 發刊

○政府의 委嘱事業

○其他 本會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으로서  
水產廳長의 認可를 받은 事業

## 3. 標準漁船制度의 導入

그동안 漁船을 建造하고자 할때에 實需要者는  
各自의 趣向과 意圖대로 建造함으로서 漁業經營의 要諦인 經濟性이 缺如되었음은勿論, 同一  
業體間의 規格이 統一 되지않아 建造費의 上  
昇과 安全性이 確保되지 못하여 漁船行政 推進  
上 많은 問題點이 提起되어 왔었다. 그래서 漁  
船行政 一元化를 契機로 標準漁船設計圖를 마련  
하여 漁船法第5條의 規定에 依한 漁船 建造 改  
造 發注許可를 得한 漁民에게는 同 設計圖를 實  
費로 配付하여 장차는 모든 漁船의 新造時에는  
이 設計圖에 의하여서만 建造토록 할 方針이다.  
이 設計圖 作成을 為하여 政府는 79年度 事前調  
查豫備費에서 81,253千원의豫算을 確保하여 現  
在 大型機底 120屯級等 12種의 標準漁船 設計圖  
를 韓國漁船協會에 用役을 주어 設計中에 있다.  
同設計가 完成되면 漁船協會에서 自體豫算으로  
設計한 業種等을 包含하여 告示한 後 앞에서 言  
及한 바와 같이 實需要者에게 配付토록 할 方針  
인 것이다. 이 設計圖는 施行過程에서 導出된  
問題點을 土台로 漁船協會의 技術陣을 活用 繼  
續的으로 改善토록 할 方針이다.

## 4. 漁船의 從業制限

漁船法施行令 第12條에서 漁船의 從業制限은  
第1種, 第2種, 第3種 으로 從事하는 業種을 制  
限하도록 하였고 각 從業制限別 漁業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 1) 第1種 從業制限

- ① 一本釣漁業
- ② 延繩漁業
- ③ 流刺網漁業
- ④ 小型旋網漁業
- ⑤ 敷網漁業
- ⑥ 海獸漁業
- ⑦ 潛水器 및 海藻漁業
- ⑧ 船引網漁業
- ⑨ 地引網漁業
- ⑩ 鮫簾網漁業
- ⑪ 채낚기漁業
- ⑫ 近海捕鯨漁業(30屯 未滿)
- ⑬ 통발漁業
- ⑭ 형망어업

⑮ 上記의 漁業에 準하는 것으로서 水產廳長  
이 認定하는 漁業

### 2) 第2種 從業制限

第2種 從業制限을 받은 漁船은 第1種 從業  
制限漁業에 從事할 수 있다. (令第14條)

#### ① 機船底引網漁業

- ② 近海捕鯨漁業(30屯以上)

#### ③ 近海拖網漁業

#### ④ 大型旋網漁業

⑤ 上記의 漁業에 準하는 것으로서 水產廳長  
이 認定하는 漁業

### 3) 第3種 從業制限

#### ① 遠洋拖網漁業

#### ② 遠洋母船式漁業

#### ③ 遠洋延繩漁業

#### ④ 遠洋채낚기漁業

⑤ 漁場 및 水產物製造加工場所로 부터 漁獲  
物 또는 그 製品을 專用으로 運搬하는 漁船

#### ⑥ 漁業에 關한 試驗, 調査, 教習, 또는 指導

#### 監督에 從事하는 漁船.

從業制限은 漁船의 크기 構造 또는 設備等을  
基準으로 하여 水產廳長 또는 道知事が 決定(令

第13條) 하며 檢查證書의 有効期間內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變更이 可能하다.

① 不得己한 事由로 因하여 從業制限 漁業以外의 漁業에 從事하게 될 때

② 漁業에 使用하지 아니하고 國內沿岸外를 航行하게 될 때

#### 사. 漁船의 管理

##### 1) 漁船의 讓受渡

大韓民國 國民이 所有하고 있는 漁船을 外國 또는 外國人에게 讓渡, 貸與하거나 擔保로 提供하고자 할 때와 外國 또는 外國人이 所有하고 있는 漁船을 讓受 또는 傳船하고자 할 때에는 水產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外國 또는 外國人으로 부터 貸借한 漁船에 對하여는 當該 外國과 特別한 協定이 없는 限 全部 또는 一部를 漁船法의 適用을 받도록 하였다. (法第25條). 이는 現在 海上運送事業法에 依하여 許可를 받고 있는 事項을 漁船法에 根據를 두어 漁船에 對하여는 同 海上運送事業法에 適用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船員을 乘船시키지 않는 漁船의 貸與, 讓渡 擔保提供과 讓受傳船 (期間傳船 除外)의 許可를 받고자 할 때에는 讓受人, 讓渡人の 住所와 國籍 및 姓名(法人의 境遇에는 그 代表者의 國籍 및 姓名도 包含한다) 讓受, 讓渡漁船의 表示를 한 申請書와 다음의 書類를添付 水產廳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令第44條)

① 讓受讓渡契約書, 讓渡者が 當該漁船의 所有者이거나 處分을 委託받고 있음을 證明할 수 있는 書類

② 漁船의 國籍證書

③ 事業計劃

i) 申請을 받은 水產廳長은 漁業秩序維持에 適合하고 經濟發展에 寄與할 수 있으며 讓受讓渡의 條件 期間等 基準에 適合할 때에 許可하도록 規定 (令第45條)하고 있다.

賃借漁船에 對하여는 漁船의 施設 現場確認検查等에 이 法의 全部 또는 一部를 適用한다. (法 第26條 第2項)

2) 所有者가 不明한 漁船等의 管理

所有者를 確認할 수 없는 漁船과 다른 船舶의 入出港, 漁業 其他 公益에 支障이 있다고 認定되는 漁船에 對하여는 다른 法令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限 當該 漁船의 管理 또는 處分에 關하여 水產廳長이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도록 規定(法第27條)하므로서 港內沈沒되어 있거나 沈沒直前에 放置되어 있는 漁船으로 因하여 港內出入港에 支障을 준다든가 줄 때에는 이의 除去, 引揚等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3) 責任保險의 加入

5屯 以上의 漁船과 그 船員에 對하여 漁船의 所有者は 반드시 加入하도록 強制規定(法第28條)으로 되어있다. 漁船의 所有者は 그 漁船의 評價額 全額 該當額의 船體保險 또는 共濟에 加入하여야 함은勿論 船員法 第10章(災害補償)에 規定한 災害를 充분히 補償할 수 있는 金額으로 하되 加入對象人員은 漁船檢查證書에 記載된 最大乘船人員으로 하도록 規定(令第48條)하고 있어 船員의 災害補償制度를 本法에서 定立시켜 貴重한 財產과 人命被害를 事前에 對備하는 目的으로 制度化시킨 것이다.

### 3. 一元化後의 問題點과 對策

漁船行政體制가 完全히 갖추어 지지않은 狀態에서 漁船行政이 當廳으로 移管됨에 따라 처음에는 많은 問題點에 逢着하게 되었다.

漁船法에 對한 漁民의 認識不足은勿論 檢查執行地와 漁船登録地가 서로 다름에 따른 漁民의 不便이 莫甚하였고, 檢查人力의 不足과 一線行政機關의 일손不足等 많은 問題點이 起起되었으나, 이의 解決을 為하여 積極努力한 結果 다음과같이 多大한 成果를 擧揚하여 이제는 漁船行政體制가相當히 갖추어졌다.

첫째 漁船檢查執行地를大幅擴大하였다. 過去 海運港灣廳에서는 地方官署에서 登錄과 檢查를同一機關에서 取扱하였으나 一元化以後에 登錄은 市郡에서 檢查는 11個 漁船檢查執行地에서 韓國漁船協會에 代行케함으로서 漁民에게相當한 不便을 招來하였으나 水產廳 告示 第8號(79.4.10)로 東草, 墨湖, 大川, 安興, 蔚山, 長承浦, 西歸浦 等 7個所를大幅擴大 告示하여 漁民의 不便을 除去하였고 特히 忠南 大川에 漁船協會支部를 新設하였다.

둘째 市郡의 漁船登錄業務가 一時에 載轉함에 따라 122名의 專擔公務員을 1979. 5. 1부로 配

置하여 人力不足 問題를 解決하였다.

셋째, 이미 制定施行되고 있는 漁船關係 各種 規則이 現實과 多少 符合되지 않는點이 있어 法運用上 隘路點이 있던것을 漁船法施行規則(農水產部令 第762號<79. 5. 25>)을 改正하여 漁船標識板 附着要領과 漁船原簿의 移送節次를 簡素化 하였고 登錄이 抹消된 漁船을 漁民의 財產權 保護를 重視하여 新規 登錄節次에 따라 再登錄을 許容도록 하였음은 勿論 小型漁船의 積量測定業務를 市郡 擔當職員이 職權으로 測定할 수 있도록 簡素화하였고 特히 漁船協會에서 施工監理를 한 경우에는 製造檢查의 一部를 免除도록 措置하였다.

넷째 또한 漁船檢查 人力의 不足 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여 “漁船檢查員等에 關한 規則”(農水產部令第763號<79. 5. 25>)을 改正하여 任用要件을 緩和하였고

다섯째 漁船檢查手數料 징수상의 不合理한 點을 是正하거나 過去에 누락되었던 것을 補完하기 爲하여 農水產部令 第766號(79. 6. 15)로 改正 告示하여 無動力 小型 漁船의 積量測定手數料를 免除도록 하였고 各種 手數料의 減免과 누락된것을 新設 措置하였다.

마지막으로 漁船協會의 自體 運營資金 不足으로 人力 確保와 協會 運營에 莫甚한 支障을 招來하였던 것을 當初 承認豫算 364百萬원 보다 210百萬원을 增額하는 追更을 編成하였고 追加所要 財源은 漁船協會에서 設計 用役等 業務遂行에 依한 自體收入의 增大로 充當도록 하였다.

#### 4. 80年度 施策方向

위에서 言及한 바와같이 漁船行政一元化에 따른 行政體系는 政府의 不斷한 努力으로 이제는 어느 程度 軌道에 進入하였다고 判斷되나 아직도 改善할 餘地가 많다. 이에 80年度에는 그간의 經驗을 土臺로 劃期的인 施策을 講究하여 보다 더 漁民의 便益을 圖謀코자 한다.

첫째 韓國漁船協會의 健全 育成을 期하고자

한다.

韓國漁船協會는 漁船法施行令 第21條의 規定에의거 漁船檢查業務과 技術開發을 目的으로 1979. 1. 4 發足한 以來 政府의 支援 未洽等으로 隘路가 많았으나 80年度에는 今年보다 政府補助金을 306%나 增額된 732百萬원을 支援토록 80年度 政府豫算에 反映하여 漁船行政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同協會를 積極育成하여 漁船行政遂行의 中樞機關으로 發展 시키고자 한다.

둘째 漁船檢查 行政區域과 一般 行政區域을 一致시켜 漁民의 便益을 圖謀코자 한다. 即 現在는 漁船檢查業務를 實施하는 漁船協會의 管轄區域이 廣域化되어 있음은 勿論 그 명칭이 地域單位 名稱을 使用 함으로서 多少 混線을 招來하여 漁船協會 支부를 道單位로 改編하여 地方行政機構와 連繫性을 維持 하도록 할 方針이다.

셋째 檢查에 따른 漁民負擔의 衡平을 期하고자 한다.

現行 制度上으로는 漁船檢查執行地 以外의 地域에 居住하는 漁民은 檢查員의 出張旅費와 加算金(3000원)을 負擔하고 있어 同 執行地內에서 受檢하는 漁民보다 相當額의 超過負擔을 하고 있어 公平負擔의 原理에 符合되지 않음으로 이를 是正하여 負擔의 衡平을 維持토록 할 方針이다.

#### 네째 奉仕體制의 強化

漁船의 登錄과 檢查 그리고 各種 認許可業務를 遂行하는데 擔當者の 誠實한 奉仕 精神의 高揚은 勿論 制度의으로도 漁民近接支援 行政體制를 確保함으로서 一元化業務의 內實化를 期하고자 하는데 이를 爲하여 擔當者에 對한 教育訓練을 強化하고 漁船檢查執行地를 大幅擴大 告示하며 檢查員을 增員하여 駐在員 制度를 活用할 計劃이다.

#### 다섯째 標準漁船設計의 普及

漁船 建造時 漁民 各者가 設計함에 따른 負擔過重과 經濟的 漁船建造를 誘導하기 爲하여 現在 政府에서 用役으로 設計中인 標準漁船設計圖를 告示하여 漁民에게 實費로 提供코자 한다.